
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-

2024. 3. 21.



방송통신위원회

순 서

I. 추진성과와 평가	2
II. 2024년 정책환경 및 방향	4
III. 2024년 핵심 추진과제	7
1. 디지털·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	7
2.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	11
3.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	14

I. 추진성과와 평가

1 주요 정책 성과

□ 미디어의 공공성·공적책임 제고

- (수신료 분리징수 도입) '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' 관련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('23.3.9.~4.9.)에서 참여자 96.5%가 찬성함에 따라 공영방송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 제도 도입('23.7월)
- (EBS 중학프리미엄 무료 전환) 유료 온라인 중학 교육 서비스인 'EBS 중학프리미엄' 강좌(인당 연 71만원)를 전면 무료화하여 이용자수 15배(14,937명→229,089명) 증가를 통한 연간 1,627억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('23.7월)
- (방송사업자 제재 강화) 허위·기만 상품소개 금지 심의규정 등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(3월·7월), 심의 관련 허위자료 제출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(8월) 등 방송법규 위반 사업자 사후규제 강화
- (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) 주관방송사 역할 강화 및 방송사 지원 근거 도입 등 재난방송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「재난방송지원특별법(안)」 마련('23.12월)

□ 온라인 허위조작정보·불법유해정보 등 유통 방지

- (가짜뉴스 대응) 사회적 피해 유발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여 방심위·국내외 포털·플랫폼 사업자(네이버·카카오·구글·메타)와 민관협의체 구성, 사업자 자율규제* 도입('23.9월) 및 범부처 TF 구성·운영('23.10월~)
- * 긴급한 재난상황, 중대한 공익 침해 등 중대한 가짜뉴스에 한해 방심위 요청 시 해당 콘텐츠에 '방심위 심의중' 표시 또는 자사정책에 따라 삭제·차단 등 자율조치
- (불법스팸 차단 강화) 차단 시스템 고도화* 등 기술적 대응,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에 대한 조사·제재 강화('21~'23년, 행정처분 2,543건)
- * 국산 단말기 간편신고 기능 개선 및 외산폰 간편앱 개발 보급('23.2월)
- (디지털 성범죄물 차단) 디지털 성범죄 정보 24시간 내 신속심의·차단 체계 운영 및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
- ※ 지난 3년간('21~'23년) 시정요구(14만7,802건) 및 심의전 선삭제 자율규제(3만7,938건)

□ 디지털 이용자 권익 증진

- **(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)**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('22.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) 예방을 위해 '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'* 발표('23.10월)
 - * (주요 내용) ▲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 강화, ▲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▲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
- **(포털·글로벌사업자 조사)**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('23.9월~) 등 엄격한 법 집행 강화
 - 글로벌 소프트웨어 사업자 어도비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이용자 해지권 제약 등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(시정명령·과징금 13억9백만원, '23.11월)
- **(메타버스 이용자 보호)** 메타버스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해 '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'* 마련('23.11월)
 - * 아동·청소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메타버스 사업자가 지켜야 할 6대 기본 원칙 및 아바타 성추행·스토킹 제한 등 구체적인 실천규범(안) 제시

□ 통신·온라인 상 국민 불편 해소

- **(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)**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·유심이동 단말기의 정밀위치 제공으로 해당 단말기 이용자 (약 335만명)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골든타임 확보('23.9월)
- **(통신분쟁 해결률 제고)** 제도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매년 분쟁 해결률* 증가, 분쟁조정절차 일체를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('23.8월)
 - * 분쟁 해결률 : '19.6월~'20.12월 53% → '21년 75.6% → '22년 82.9% → '23년 89.6%

2 개선 필요사항

- OTT와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 및 시대 흐름에 맞는 방송·통신·미디어 체계개편 필요
- 디지털·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

II. 2024년 정책환경 및 방향

1 미디어 환경 분석

□ 디지털·미디어의 일상화 및 보편화

-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* 및 디지털 기기** 보편화에 따라 디지털·미디어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의 일상을 주도

* (글로벌) 5G 가입: '23년 16억명→'29년 53억명, 모바일데이터 소비: '23년 대비 '29년 3배 증가 전망

** (국내) 스마트폰 보급률 : '23년 94.8%, 가구 인터넷 접속률 : '22년 99.96%

- 개인이 주도적으로 디지털·미디어 서비스를 생산·소비하는 등 매체 이용 행태*에 따라 디지털·미디어 서비스 제공 패턴도 변화**

* (이용률) 여가용 인터넷 99.1% 동영상 서비스 96.1% 인터넷뱅킹 79.2% 등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→ AI 서비스 (42.4%, 전년 대비 10%p ↑), 메타버스(11.0%, 최초조사)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 확대('2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)

** (글로벌 시장) OTT: '24년 약 96조, 생성형 AI: '28년 40.4조, 메타버스: '30년 1,770조 전망

□ 디지털·미디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도래

-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이 전통적 미디어에서 OTT 등 신유형 미디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,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OTT 시장은 크게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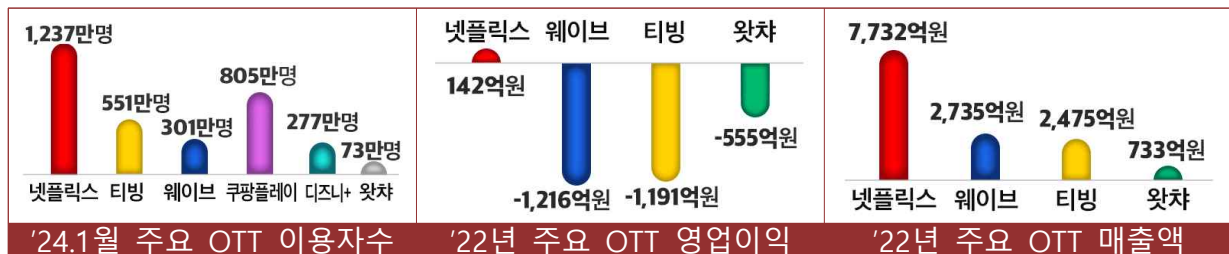
※ (국내 OTT 이용률) '21년 69.5% → '23년 77.0%

(가구 전체 TV시청률) '20년 34.10% → '23년 28.07%

- (지상파 시청률) KBS1: 4.28%→2.91%, MBC: 1.83%→1.44%, SBS: 2.26%→1.55%

-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·미디어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*되고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작사가 글로벌 OTT에 종속**

* 국내 OTT 시장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가 사실상 지배



- ** 제작비 상승에 따른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 축소로 드라마 제작이 방송에서 OTT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OTT 플랫폼이 높은 제작비를 보장해주는 대신 저작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 전환
- (예시) 1조원을 벌어들인 오징어 게임의 예능버전 '오징어 게임 : 더 챌린지'는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미국 출연진으로 제작

□ 디지털·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요구 증대

-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 사업자 등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 및 신뢰성·투명성 약화 등 사회적 논란 심화*
 - *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에 인위적 개입 및 특정 언론사 부당한 차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실시 중('23.9월~)
- 미디어산업 무한경쟁시대 돌입으로 전통 미디어의 공공성·공정성 약화, 신유형 미디어는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 수행 미흡
-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·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,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·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
 - ※ 美 바이든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자동 녹음전화, 美 유명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사진이 유포되어 하루도 안 돼 7천만명 이상이 조회 등
 - 생성형AI 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오류 및 기술적 특성 등에 따른 왜곡 정보* 생성 및 편향성 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피해 발생
 - * 오래된 정보나 허위정보 학습 등으로 실제로는 없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(hallucination) 발생

□ 디지털 플랫폼 혁신과 이용자 권익 간 조화 필요성

- 단기간 내에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들의 플랫폼 서비스 의존도가 심화되면서, 이용자 피해 및 부작용*도 함께 증가
 - * 다크패턴(특정선택 유도) 등 이용자 선택권 제한, 정보의 검색·노출기준 불명확, 서비스 장애·중단 시 이용자 보호조치 미흡 등
- 대규모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행위*에 대응하여,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업자의 자율개선** 필요성 증대
 - * 사이드로딩(외부어플 설치) 차단, 상호운용성(다른 플랫폼과의 서비스 연동) 부족, 서비스 이용정보 독점 등 대형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
 - ** 플랫폼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23.11월)
- 시장 독과점적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구독료 인상* 등을 통한 국내 수익 회수 전략에 따라 국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
 - * 넷플릭스 : 계정 공유 추가 유료화(타인 공유 시 인당 5,000원)('23.11월~)
 - 유튜브 프리미엄 : 월 10,450원 → 월 14,900원(43% 인상)('23.12월~)

비전

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

추진
과제

① 혁신 성장 기반 조성

- ①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
- ② 방송·통신·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
- ③ 방송·통신·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

②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

- ① 방송·통신·미디어 신뢰성 제고
- ② 방송·미디어 공공성·공익성 제고
- ③ 공영방송 공적책임·공공성 강화

③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

- ①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
- ②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
- ③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

Ⅲ. 2024년 핵심 추진과제

① 혁신 성장 기반 조성

1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

□ 방송·통신·미디어 법제 패러다임 개편

- (미래 지향적 미디어 법제 개편) 개별법에 분산(방송법, IPTV법, 전기통신사업법)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하여, 신·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(안) 입법 추진

※ ①동일서비스-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 마련, ②미디어 기본 책무 정비, ③미디어 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

- (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규범 마련) AI, 메타버스,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마련 추진

-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,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'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'(가칭) 제정 추진

※ 고영향 인공지능서비스 구분, 위험성 관리, 분쟁조정 등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체계 마련 등

□ 디지털·미디어 新전략 제시

- (미디어혁신 추진체계 마련)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와 진흥을 균형있게 반영한 발전전략 마련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위해 지속검토 추진

- (방송 서비스 효율화) 서비스 수요,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UHD, AM라디오, DMB의 서비스 운용 효율화 방안 모색

- UHD 방송망 구축일정 조정 등 지상파 UHD 정책 개선 및 제3차 AM 방송국 기능 조정*, DMB 기능·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검토

* '23년까지 2차에 걸쳐 KBS를 제외한 총 17개 AM라디오(MBC·SBS 등) 송출 중단('23.5.8.)

□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규제 완화

- (허가·승인 유효기간 확대)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·중편·보도PP의 허가·승인 유효기간 범위 확대 추진
 -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있을 시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
- (소유·경영규제 완화) 국내 방송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,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적극 검토
 - 대기업*의 방송사 소유제한과 지상파간, 지상파-유료방송간 경영규제 완화
 - * 국가 GDP는 '08년 1,154조원 → '22년 2,162조원으로 약 87% 증가하였으나, 방송법 시행령의 '대기업' 기준은 '08년 이후 '자산총액 10조원'으로 동결
- (방송편성 규제 완화) 방송-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, 방송 편성의 자율성,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
 -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및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검토, 순수 외주제작 의무편성 완화* 등 방송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
 - *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수입물(영화, 애니, 음악 등) 편성비율 상한(연 90%이하), 지역 방송의 순수외주제작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(방송사별 3.2%~20%) 폐지 등

□ 방송 광고 규제 완화

- (광고 유형 간소화 및 형식규제 폐지)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신 방송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방송광고 종류·방식 등과 관련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검토
 -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수반될 수 있는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청권 보호방안 수립 추진
- (광고 판매규제 형평성 강화) OTT 등 뉴미디어 활성화·매체 간 차등 규제로 인한 방송광고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크로스미디어렙* 도입을 검토
 - * 미디어렙사가 방송과 연관된 온라인광고를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

- **(타이틀 스폰서십 도입 등 협찬규제 완화)** 제목협찬(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)을 금지하는 협찬고지 규제를 단계적*으로 완화하고 일부 방송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작협찬 규제 폐지를 검토

* 지역·라디오 프로그램에 정부·공공기관이 협찬한 경우, '제목협찬' 우선 허용 검토

□ 미디어·콘텐츠 해외진출 및 신산업 활성화 지원

- **(OTT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)** 해외 현지 OTT 이용행태 및 법적·제도적 규제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
 - 국내·외 업체, 학계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
 - ※ **(시장조사)** 사우디아라비아, 튀르키예 등 / **(이용행태조사)** 호주, 사우디아라비아, 태국 등
- **(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)** 한-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 협정체결,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해외진출 K-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
 - 지역방송사의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 및 해외 방송사와 교류협력 행사 등을 통해 지역방송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
 - ※ 베트남(Telefilm), 싱가포르(ATF)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 및 지역방송 교류협력 행사 지원
- **(위치정보서비스 규제완화)**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사업자 진입장벽 해소 및 규제완화 추진
 - 개인·사물 위치정보 구분규제 폐지, '위치정보사업자'로 사업자 분류체계 일원화 및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* 등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
 - * 위치정보사업자(등록)·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(신고) → 위치정보사업자(신고)
- **(위치정보사업자 지원 확대)** 성장잠재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위치정보산업분야 기업·청년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
 - 중소·영세 사업자 및 청년 대상 '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' 개최 및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추진
 - ※ 선정기업 확대('23년 30개→'24년 75개) 및 모집분야 세분화(공공안전·생활밀착형 부문 등)

□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

- (단말기 유통법 폐지) 국민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
 - 법 폐지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과 지원금 관련 고시 제·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중고폰 유통 활성화, 중저가 단말 확대 유도
 - ※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할인 조항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
- (불법행위 근절) 이통사·유통점·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, 허위·과장·기만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집중 점검
- (이용자 피해 예방) 신규 단말기 출시 시 급증하는 이용자 사기 피해* 방지를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
 - * 선택약정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 조건을 유통점이 최신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등

□ 방송·통신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

- (플랫폼 이용자 보호)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, 이용률 상위 앱·웹 서비스*의 가입·이용 단계 불편사항 점검
 - * (예시) 쇼핑 등 앱마켓에서 이용률이 높거나 최근 이용률 급격히 증가한 서비스
 - 이용자 눈속임 마케팅(다크패턴)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
- (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조사) 유선·무선·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, 선택권 제한 행위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
- (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)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강요 및 유료 방송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점검·조사
 - ※ 유료방송 시청자 불편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 활성화로 사업자 자율개선 유도 병행
- (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) 방송사-외주사 간 방송프로그램 계약체결, 수익분배, 제작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(지상파·종편PP 재허가·재승인 조건) 및 외주거래 실태조사 강화(문체부 공동)

2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

1 방송·통신·미디어 신뢰성 제고

□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·투명성 확보

- (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)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
 -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, 평가기준·평가결과 등 운영내역 공개,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
- (알고리즘 투명성 확보) 맞춤형 추천서비스의 필터버블* 현상을 개선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
 - * 필터버블(Filter Bubble) 현상 :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
 -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사업자(포털, OTT 등)의 자율준칙 시행, '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' 구성 및 운영내역 공개 등 추진

□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

- (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) 허위조작정보 정의, 생성·유포 단계별 대책, 포털·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 및 매크로 부정이용 등 여론 왜곡·조작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
- (자율규제 활성화) 플랫폼사의 모니터링·신고처리, 기술적·관리적 조치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
 - ※ 법률 제·개정을 추진하되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,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여 이용자 보호체계 조기 구축
- (팩트체크 플랫폼 사업 개선) 허위조작정보 등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·외 전문가의 팩트체크 결과 공유 플랫폼 운영
 - ①플랫폼 운영주체와 팩트체크 기관의 이원화, ②복수의 팩트체크 기관 선정 등을 통해 팩트체크 결과의 편향성 최소화 및 전문성 제고

□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·재승인 추진

- (심사 제도 개선) 매체별 심사기준(TVvs라디오, 중앙vs지역방송) 차별화,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 등 재허가·재승인 제도 개선 검토
- '24년 허가·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*에 대한 재허가·재승인 추진
- * (재허가) KBS1DTV 등 12개사 146개 방송국(12월) / (재승인) YTN·연합뉴스TV(3월), 채널A(4월)
- (이행실적 점검 강화) 콘텐츠 투자 강화, 협찬 고지, 외주 상생 협력 등 재허가·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적 점검

□ 방송평가 개선 및 심의제재 실효성 강화

- (방송평가 제도 개선) 공정성·객관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평가 강화*, 변별력이 낮고 형식적인 평가항목 조정 등 평가제도 개선 추진
- * 공정성·객관성 위반에 대한 감점 확대, 공정성 평가항목 추가 발굴 등
- (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 제재 강화) 허위·기만·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 강화('24년 하반기)

□ 재난방송 고도화

- (재난방송 법령정비)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재난방송주관방송사(KBS)에 수어 재난방송 의무 부과* 추진
- * 현행 고시에 규정된 수어 재난방송 관련 규정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상향
- (재난방송 지원 확대) FM라디오 등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강화(격년→매년),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 제공 및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 지원 확대('23년 20대 → '24년 60대)
- *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에 따라 수신환경 실태조사 실시·공개, 중계설비 설치 지원
-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 확대(10개사→36개사) 및 안전점검 정례화

□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재원 구조 개편

- (수신료 징수제도 안착 지원)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 추진
-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,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 지속 검토
- ※ (영국) 문화부 장관, 수신료 '28년 이후 폐지, 새로운 재원마련 방안 찾아야 한다고 언급('22년) (프랑스) 수신료 폐지 확정('22년) 및 '25년까지 부가세 수입금 지원 등
- (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강화)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협약제도 도입 등 검토
- ※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국회 논의 및 법안 발의 시 적극 검토 및 지원

□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제공 확대

- (교육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)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 중학프리미엄* 무료 제공('24년, 47억원)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 확대
- * EBS 홈페이지를 통한 교과서·문제집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콘텐츠 유료 제공 서비스
- (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) EBS 교육방송, 지역·중소방송,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제고(384.5억원)
- 지역·중소방송사 대상* 지역 밀착형·경쟁력 강화 등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
- ※ 지원대상(35개사) : 지역방송 29개사(지역MBC 16사, 지역민방 10사, 지역라디오 3사 (광주영어, 부산영어, 경인방송)), 중소방송 6개사(종교방송 5사, YTN라디오)
- (K-콘텐츠 제작지원) 아리랑 국제방송, KBS 대외방송 제작·송출지원을 통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(242억원)
- ※ (아리랑 국제방송) 전세계 대상 한국문화·산업 콘텐츠를 다언어로 제작·송출 (KBS 대외방송) 북한동포 대상 한민족방송, 전세계 외국인 대상 국제방송(11개 언어) 제작·송출

3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

1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

□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

- **(피해예방 맞춤형 교육 강화)**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,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* 실시
* 대한노인회,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 대상 대면교육 실시 등
- **(온라인 피해·분쟁 빈발사례 주의경보)** 온라인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빈발사례 '주의경보' 발령, 사전교육 실시 및 피해상담 사례집 발간*
* 대규모·다발성 피해사례 등을 선정하여 대응방법 및 사전예방요령 등 대국민 안내
- **(본인확인서비스 개선)** 재외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(외교부 협조),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수단 발급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열람 지원 추진

□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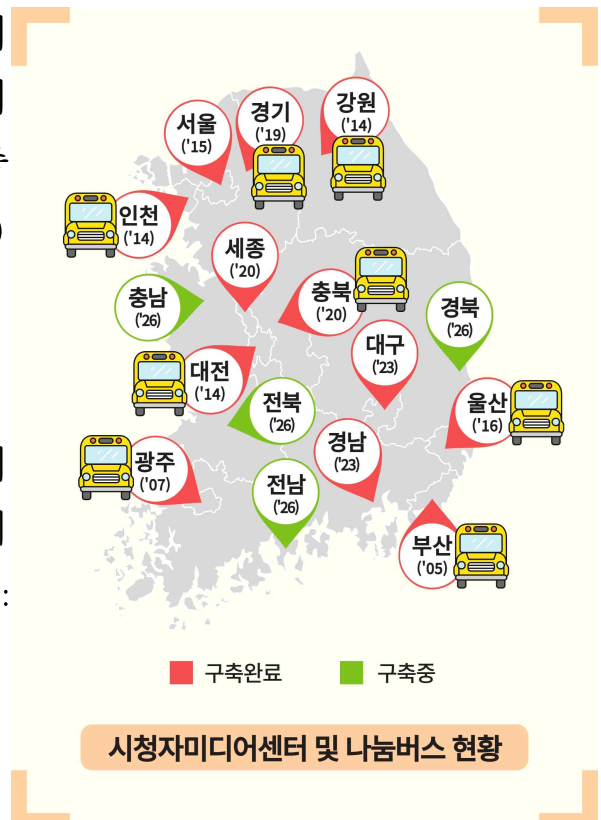
- **(시각·청각장애이용 TV보급 확대)** 시각·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TV 지원 확대('23년 20,000대 → '24년 32,000대)
※ 맞춤형TV 누적보급률 : ('23년) 40% → ('24년 목표) 45% → ('25년 목표) 50%
- **(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강화)** 공익성·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방송 온라인(VOD) 콘텐츠 제작 지원을 보도PP 등으로 확대 추진
※ '23년 : 지상파 4사(KBS·MBC·SBS·EBS), 종편 4사(TV조선·JTBC·채널A·MBN)
'24년 : 보도PP 2사(연합뉴스, YTN)를 추가로 지원
- OTT 사업자 등에게 장애인방송 의무 부과 검토 및 제작 지원 확대 추진
- **(장애인방송 품질제고 및 신기술 반영)** 장애인방송(폐쇄자막, 화면해설, 한국 수어) 품질 제고를 위해 단계적 평가체계 마련(유형별 세부평가 방안 등)
- AI 기반 신기술을 도입·반영하여 미디어(스마트폰·태블릿 등)의 음성을 자막으로, 자막을 수어로 변환하는 시스템 개발·고도화를 지속 추진
※ 음성인식률 제고('23년 89.1% → '24년 90% 예정), 자막을 수어로 변환하는 학습 데이터 구축 확대('23년 10만 문장 → '24년 25만 문장 예정) 등

□ 전국민 미디어 교육 제공 확대

- (미디어교육 통합전략 마련) 전국민 미디어 활용을 위해 교육 대상별·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범부처 ‘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’ 수립(‘24.1분기)
 -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,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, 미디어교육 강사 전문성 제고 등 체계적 미디어교육 지원 추진
- (맞춤형 미디어교육) 유아·초·중·고, 중·장년층 및 노인·장애인·다문화 가족 등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제공
 - 지역민들이 신기술에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·VR·빅데이터 등 ‘신기술 미디어 교육’ 추진
- (지역별 특화교육 확산) 지역관심사항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센터가 ‘지역소통의 장*’이 되도록 지역별 특화 교육프로그램·축제** 등 운영
 - * 길거리 쓰레기줍기 인식제고 콘텐츠 제작 ⇒ 담배꽂초 무단투기 근절 위한 부산시 조례제정(‘22.6)
 - ** (부산)장애인미디어축제, (광주)청소년방송콘텐츠경연대회, (대전) 혐오표현 예방교육 등

□ 미디어 참여 인프라 개선

- (지역미디어센터 전국화)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·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역미디어센터 구축 확대(‘24년, 제주 지역 센터 유치 추진)
 - ※ 미디어센터 이용자수: (‘22년) 97.3만명 → (‘23년) 102.6만명 → (‘24년) 105만명
- (미디어나눔버스 활용)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(8대)를 활용한 섬·도서 지역 등 지역민 미디어 체험 기회(예: 강화 섬마을 미디어 교육 등) 제공 확대
 - ※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횟수: (‘22년) 285회 → (‘23년) 483회 → (‘24년) 800회



□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

- (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)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
 - ※ (미국)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등 AI에 대한 행정명령 공개('23.10월)
(EU) 실존 인물 등과 유사해 보이게 생성·조작된 정보는 별도 표시 의무
- (생성형 AI 피해예방)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*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
 - * 학습데이터 관련 투명성 제고, 설명가능성 보장, 필터링 등 기술적·관리적 조치 등 검토
- (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개설) 초상권 침해, 디지털 성범죄 등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내 전담신고 창구 설치

□ 디지털 서비스 국민불편 해소 및 이용환경 개선

- (플랫폼 장애 대응 강화)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 단축 (4→2시간 이상), 무료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 고지개선('24.2분기)
 - ※ 이용자 고지 수단(문자, 전자우편, 홈페이지·앱)에 SNS를 추가
- (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개선) 플랫폼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항목 강화* 추진
 - * 피해구제 절차 세분화, 서비스 해지 용이성 및 특정 서비스 가입 예방 등의 지표 신설
- (국내대리인 제도 개선)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내법인 우선지정 등 대리인 자격요건 강화, 대리인 업무의 확대* 등 추진
 - * (현재) 방통위·과기부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(개선) 이용자 불편접수채널의 확보 등 검토
-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사업자 현황 파악 및 개별 사업자에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도 관리 강화
- (망 이용 가이드라인 이행점검) 주요 ISP와 CP 간 망 이용계약 현황 파악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피해 예방
 - ※ 국내외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(ISP)와 콘텐츠 사업자(CP)의 망 이용계약 형태, 주요 계약사항, 부당한 계약조건 등 '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' 이행여부 점검('24.3월~)

□ 불법스팸 전송 차단 강화

- (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확대) 악성문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 등을 통해 국산 휴대전화에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* 제공
 - * 이메일의 스팸메일함과 유사하게 휴대전화에 스팸문자함을 별도 마련·시행(24.2분기)
- (불법스팸 차단체계 강화)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추적·조사기간 단축 (7일→3일),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문자발송 자격 사전 관리·감독* 및 문자발신번호 위·변조 검증 체계 마련(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)
 - * KT, LGU+, SKB 등 9개 문자중계사가 1,000여개 하위 문자발송사에게 문자발송 자격 부여

□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

- (권리침해 보호 절차 개선)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
 - 삭제·임시조치 대상을 모욕까지 확대하고 분쟁조정, 임시조치 적부(的否) 결정(재판상 화해 효력) 등을 담당하는 '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' 신설
- (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 강화 등) 원스톱 피해구제 기능(신고접수~피해구제) 강화 및 기관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센터 법적 설치 근거 마련
 - ※ 권익위(110국민콜)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확대로 피해 신속처리 및 상담 전문성 강화

□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불법·유해정보 대응체계 구축

- (불법정보 신속 삭제·차단) 마약, 도박, 저작권 침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불법·유해정보의 신속한 삭제·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
 - 마약(식약처), 도박(사감위) 등 소관 기관이 명백한 불법 정보로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
- (심의기간 단축)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서면심의 (24시간내 심의 처리) 대상을 주요 불법·유해정보까지 확대하도록 개선 추진